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김한규 · 민병덕
박상혁 · 박은정 · 박정현
서영석 · 이개호 · 이정문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·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·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8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제6호까지”를 “제7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	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</u> <u>이상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</u> <u>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</u> <u>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</u>
<u>5.·6.</u> (생 략)	<u>6.·7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7.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6호까</u> <u>지</u> 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	8. ----- <u>제7호까</u> <u>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</u> <u>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</u> <u>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</u>

<u>④</u> · <u>⑤</u> (생략)	<u>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⑤</u> ·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